

—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3월 16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3월 19일

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확대 구성하고,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(안 제8조).

-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-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함.(안 제21조, 안 제40조의4, 안 제60조, 안 제61조 개정 및 단서신설, 안 제98조)
- 자동차세 일할 계산 부과규정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제3항).
-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비율을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함.(안 제40조의3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(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개선,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,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규정 보완, 주행세 법정비율 인상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임.

- 따라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